임예진 관세법(2026년 대비) 개정사항 (4)

- 관세법 시행령 2026. 4. 3. 개정 [시행 2026. 4. 3.]

p.222 : 영 제92조 제1항 수정

제1항 세율인하에 대한 부과요청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 또는 변경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91조 제1항 ①부터 ⑤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

② 해당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세율 · 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③ 법 제71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④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으로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근거

개정 전	개정 후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 또는 변경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내지 ⑤의 사항	①부터 ⑤까지의 사항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후단에 따라
신설	④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품목(이하 이 조에서 “집중관리품목”이라 한다)으로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근거

p.223 : 영 제92조 제3항부터 제12항 수정 및 신설

제3항	수정
제4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신설
기존 제4항	제5항으로 이동
기존 제5항부터 제7항	제10항부터 제12항으로 이동

제3항 수량의 할당

법 제71조(할당관세)의 규정에 따른 일정수량의 할당은 해당 수량의 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추천기관"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 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해당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제4항 추천기관의 조건

추천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관 물품에 대해 수량의 할당을 받기 위한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할당관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집중관리품목의 경우에는 반출기한 등 그 물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항 추천서 제출기한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6항 추천 취소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추천기관은 그 자가 추천받은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제7항 통보

추천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을 하거나 제6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세관장(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추천 물품에 대한 정보

② 추천을 받은 자 및 수량

③ 추천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④ 제6항에 따라 추천을 취소한 경우에는 추천이 취소된 자 및 추천이 취소된 수량 등 추천 취소에 관한 정보

제8항 추천 조건의 위반 통보

세관장은 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추천을 받은 자가 반출기한 등 추천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추천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항 할당관세 적용배제

제6항에 따라 추천이 취소된 경우 세관장은 해당 수량의 물품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0항 수입통관실적의 확인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까지의 수입통관실적의 확인은 관세청장이 이를 행한다.

제11항 의견수렴

관계부처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해당 관계부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또는 가격급등 등으로 할당관세를 긴급히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용도 및 대체물품

② 제1항 ②, ③ 또는 제2항 ②, ③의 사항

제12항 자료제출 협조요청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수출자·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p.232 박스 : 영 제95조의2 신설 (법 제79조 제1항 밑에 신설)

법 제79조 제1항 관련 시행령

준용규정 [영 제95조의2]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대항조치에 관하여는 영 제86조(보복관세)를 준용한다.

p.604 박스 : 영 제248조 수정

가산세 대상물품 [영 제248조]

법 제241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의 물품으로 한다.

① 물품의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와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② 영 제92조(할당관세) 제1항 ④에 따른 집중관리품목